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25
----------	------

발의연월일 : 2016. 12. 26.

발의자 : 조경태 · 정성호 · 엄용수

김성태 · 박완수 · 김도읍

윤영석 · 김현아 · 권성동

유재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조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으나, 2016년 현재 23개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와 별도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은 공적인 측면에서 나라장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각각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조달업체의 경우 공공분야 입찰 및 수주를 위해 나라장터 이외에도 기관별 자체전자조달 시스템에 각각 중복 등록·입찰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로 이용전환을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달청장은 이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이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요기관의 장에 한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조달청장은 이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④ 수요기관의 장이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p>